

[별표 3]

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(제5조제4항 관련)

계획홍수량(m^3/s)	둑마루폭(m)
200 미만	4
200 이상 5,000 미만	5
5,000 이상 10,000 미만	6
10,000 이상	7

비고

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둑마루폭을 4m와 침투 및 비탈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허용 둑마루폭 중 큰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1.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
2.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